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개정('95. 1. 5 법률 제4874호)됨에 따라 위임조례 삭제
- 농업기반시설관리 업무중 목적외사용 및 폐지권한 위임
-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.징수 권한을 위임.
-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정비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사항 위임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행정사법 부칙 제5조
- 농어촌정비법 제20조
-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
-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지방과소관 제1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.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농지개량과소관 제5호다음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농지개량과	6	◦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승인	농어촌정비법 제20조
	7	◦ 농업기반시설의 폐지	농어촌정비법 제21조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지역경제과	8	◦ 가격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-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	물가안정예관한법률 제29조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계획과 소관 제1호 및 제36호를 삭제하고 제2호내지 제38호를 제1호내지 제36호로 하며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6호 다음에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지역계획과	1	○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	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
	2	○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	동법 제29조
	3	○ 건설기계조종사 신규면허 발급	동법 제26조
	4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	동법 제26조
	5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대장 기재 및 보고	동법 제26조
	6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반납	동법 제26조
	7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	동법 제28조
	8	○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무 미이행자 과태료처분	동법 제30조
	37	○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	동법 제8조
	38	○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	동법 제8조

부 칙
이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